



## 명쾌한 수다

# 현금인출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해주는 행위, 불법일까요?

### 〈사건의 개요〉

수사협조자(A)가 성명불상자(B)에게 인출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경찰에 제보를 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서 인출금액의 10%를 보상으로 주가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체크카드를 수령하였습니다.

### 쟁점 및 법률

#### 〈쟁점〉

1.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호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

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2]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

비스를 이용하여 갑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 1심 및 원심 판결

1심: 유죄

원심: 무죄(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는 보관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가 수수 약속’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의 실행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범죄 이용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쿼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甲에게 송부함으로써 대

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고 판시하였다. ⇒파기환송

## 결론

범죄 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인출과 수수료지급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현금 인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